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주인수권증권

장외매수에 따른 세금 안내

당사는 '20년 4/16일부터 '20년 10/16일까지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장외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세금 안내를 드리오니,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거래세 (0.45%)

①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인이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인 경우

- 양도인(신주인수권 매도자)이 직접 신고 납부

②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인이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경우

- 양수인(주)한화갤러리아 직접 신고 납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양도인이 직접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내비거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당사(주)한화갤러리아가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①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인이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인 경우

- 양도인(신주인수권 매도자)이 직접 신고 납부

②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인이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경우

- 양수인(주)한화갤러리아 직접 신고 납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양도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국내비거

주자이거나 외국법인의 경우 당사(주)한화갤러리아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취득금액이 확인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취득금액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이 20%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단, 당해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유의사항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02-410-7176 (한화갤러리아 자금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